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32호 2023. 4. 27.(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925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926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927호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928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9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930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93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932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37
○ 사천시 조례 제1933호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44
○ 사천시 조례 제1934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1935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0
○ 사천시 조례 제1936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사천시 조례 제1937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8
○ 사천시 조례 제1938호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939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 사천시 조례 제1940호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68
○ 사천시 조례 제1941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7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 75
- 사천시 고시 제2023-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76
- 사천시 고시 제2023-83호 하천점용(연장)허가 고시 ----- 78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65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79
- 사천시 공고 제2023-663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 104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25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26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 예산 편성과정”을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 관내”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인터넷”을 “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7조제1항 중 “주민들”을 “주민”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를 “시장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물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물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읍·면·동장이나 시민단체 대표의 추천 등에 의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9명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은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27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
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
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
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28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라. 다문화가족 중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 등)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급

-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신고
- 2)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8. 산후조리비 지원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9.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10.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진 한 쌍의 참가자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을 결정하고,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4. 결혼축하금 및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별지 제10호서식 제5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2.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중 출산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아: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란 다음에 산후조리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후조리비	○ 제3조제8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	---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기준란 중 “50만원(학기별 25만원)”을 “56만원(학기별 28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결혼축하금 지원란 및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결혼축하금 지원</p>	<p>○ 제3조제9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당 100만원 지원 가.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나. 지원대상: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단, 6개월 미만시 연속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지원특례 - 부부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 지원자를 제외 한 나머지 지원받는 자만 50만원 지급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 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라. 지원방법: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천사랑상품권을 부부 각 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되 동의나 위임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타인에게 지급 가능</p>
<p>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p>	<p><input type="checkbox"/> 참여자 기념품 - 지원대상: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input type="checkbox"/> 성공축하금 ○ 시 주관 동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제3조제10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한 쌍당 100만원 이내의 사천사랑상품권 지원 가. 신청기간: 미혼남녀 인연 행사로부터 2년 이내 나.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일 것 다. 지원특례: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p>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지원금 지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잔여차수가 있는 기존 셋째자녀 이상 영아에게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관련 별표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 대학생 및 기존 지원중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결혼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성공축하금은 2021년 행사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27.>

[양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실거주자는 시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둘째 자녀(이름:)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시 1회당 50만원 지원 ※ 출생일 전후로 180일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 출산축하용품	[] 아기용품세트 [] 스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우대인증	가구원 성명()
	[]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 보험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보험료 지원기간(5년) 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 자격 상실됨
	[] 유류기 대여	※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문의
[] 수도요금 감면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로 검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검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검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BC카드(은행)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B국민, N농협, S저축,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인,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사천시청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4. 27.>

(앞쪽)

「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사천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혼인당사자)	남편(부)			아내(처)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신청내용	성명	혼인신고일	전입신고일	인연만들기 행사일	휴대폰 명의	지급받을 휴대폰 번호
	남편					
	아내	상동				

○ 한 쪽 배우자에게 지원금의 전액지급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각자에게 지급

○ 지급방식 모바일 지류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사천시 결혼축하금
 사천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성공축하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각 1부.(정보제공 동의시 제외)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내용 확인 바람, 동의 거부 시 위 축하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 축하금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축하금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위 축하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

(남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내)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 확인	·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 ~ 만49세 남녀	확인 []	확인 공무원 직급 :
	· 혼인신고(2023.1.1.이후) 후 2년 이내	확인 []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천시 주민등록자	확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 주민등록자(미혼남녀 축하금)	확인 []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뒷쪽)

<p>참고사항</p>	<p>【결혼축하금 신청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 만 49세까지의 부부로서 - 혼인당사자 2명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속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가능 - 1인당 생애 1회에 한 해 지원합니다. - 부부중 일방이 이미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최초로 지원 받는 자만 총액의 1/2을 지원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합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단, 신청일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p>【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신청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차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혼인으로 연결된 한 쌍이 혼인신고일 기준 만19세~만49세 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이면서 행사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것 - 단,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 -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기한: 인연 만들기 행사일로부터 2년이내 단, 신청일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원제외 <p>○ 결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사천사랑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단, 예산 사정으로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작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일: 혼인신고일기준 최근 사천시 전입일을 기록합니다. ○ 사천시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결혼한 경우 해당신청 서식에 부부의 행사 참여 일지를 기입합니다. ○ 한 쪽 배우자에게 전액지급을 원하는 경우 『동의』에 체크하고, 각자에게 1/2씩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각자에게 지급』에 체크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급받을 휴대폰번호는 결혼 당사자 각자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하며, 휴대폰의 명의로와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휴대폰 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지급받을 휴대폰번호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202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감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4. 27.>

결혼축하금 등 지원자 명단

연번	혼인 신고일	남 편				아 내				지급일	비고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급액 (천원) 결혼 축하금 인연만들기 축하금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급액 (천원) 결혼 축하금 인연만들기 축하금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29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23조제1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을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⑭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⑰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0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천시”로, “관계법령에 따른”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위임연월일”을 “위임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를 “사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제5항에 따른”을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 내”를 “기간내”로, “한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른”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27.>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사 천 시 장 귀하 </div>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27.>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사천시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사천시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1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을 “에 따라 사천시 소속”
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표 3] <신설 2023. 4. 2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2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② 협의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 도시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3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9조(의견청취 및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4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생활체육관을”을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
센터를”로 한다.

제20조의2 중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8.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종목	1일 이용			월회원 (자유반)	강습반 (월회원)	비고
	구분	개인	단체			
수영장	어른	3,500	3,000	55,000	65,000	
	군인·학생	3,000	2,500	45,000	55,000	
	어린이·경로대상	2,500	2,000	35,000	45,000	
헬스	전회원	3,000	-	40,000	-	
에어로빅	전회원	-	-	-	※ 주5일: 40,000 주3일: 30,000	
생활스포츠 (댄스, 요가, 필라테스)	전회원	-	-	-	※ 주5일: 60,000 주3일: 40,000	
탁구	전회원	3,000	-	40,000		1명/ 2시간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전용 사용료		비고
	기 준(시간)	금액	
다목적 강당	4	60,000	
음악실	4	20,000	
문화교실1	4	40,000	
문화교실2	4	20,000	
에어로빅실	4	60,000	
G.X룸	4	40,000	
냉·난방비	4	20,000	·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프	4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5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6조의4(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표 1] <개정 2023. 4. 27.>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 어린이: 만7세~12세 · 청소년: 만13세~18세 · 성 인: 만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청소년·군인	1인1일	700	500	
어 린 이	1인1일	400	200	

□ 이용료

시설명	구 분		이용 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m ² (원룸형)	2인~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m ²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m ² (투룸형)	4인~6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m ² (복층형)	8인~10인	1동/1일	120,000	170,000	
	야영데크	16.0m ²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m ²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입장료 면제

□ 기타시설 이용료: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4. 27.>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및 관리대장 (제6조의2제4항 관련)

예약제외 시설물 : 산림휴양관 22호

예약제외 시설물 관리대장

시 설 명	명 칭	이용기간	사 용 자 (남/여)	사 유	기 타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6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험을”을 “보험 또는 유사보험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보장범위)”를“(보상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각각 “보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부상 또는 사망”을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7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0조제1항 중 “· · 센터 · ·”를 ““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

· 총괄 · 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 · 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 · 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8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6조에 따른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4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간병 서비스 사업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6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간병인의 자격 등)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8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39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40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3.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7조에 따른 사천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사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반영)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와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와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사천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1941호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제14조제2항에 다음 계산식을 추가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times$$

제17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제17조제11항 중 “제1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을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⑭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⑰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고시 제2023-7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사	주 소	경남 사천시 동금6길 28
하천명		사천강(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847번지		
	면 적	0.13m ²		
	기 간	영구(2023. 4. 27.부터)		
	목적 및 개요	한전주 신설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 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고시 제2023-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당초	시도	14호선	용현 선진 ~ 사천 대포	용현면 선진리 410-1	4,281	용현면 선진리 410-1	용현면 선진리 1120	-	0.098
변경	시도	14호선	용현 선진 ~ 사천 대포	용현면 선진리 410-1	4,369.0	용현면 선진리 410-1	용현면 선진리 1120	-	0.186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시도14호선(공동주택 신축 진출입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2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행정동 5층)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편입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 고 (소유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기정		5필지		35,506.8	4,281.0	-	-				
변경		5필지		35,506.8	4,369.0	-	-				
1	용현면 선진리	719	구	13,546.8	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용현면 선진리	719	구	13,546.8	3,146.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2	용현면 선진리	1,120	도	1,187.0	1,186.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용현면 선진리	1,120	도	1,187.0	419.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3	용현면 선진리	410-1	도	765.0	763.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용현면 선진리	410-1	도	765.0	642.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4	용현면 선진리	410-22	도	2,226.0	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용현면 선진리	410-22	도	2,226.0	9.0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5	용현면 선진리	410-24	도	17,782.0	2,332.0	국(농림축산부)	-				
	용현면 선진리	410-24	도	17,782.0	153.0	국(농림축산부)	-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고시 제2023-83호

하천점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김순남	주 소	사천시 곤양면 광포만로8
하천명		무고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95-7번지		
	면 적	106m ²		
	기 간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5년간)		
	목적 및 개요	창고부지 진·출입로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연장)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공고 제2023-65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1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2)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2)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총수: 1,008명(변동없음)
- 2) 집행기관의 정원: 984명 → 983명(감 1명)
-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 25명(증 1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2)

- 1) 8급: 25% 이내 → 26% 이내
- 2) 9급: 10% 이상 → 9%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7. ~ 5. 8.(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84명”을 “9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4명”을 “25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98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4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1.----- <u>983명</u></p> <p>2.----- <u>25명</u></p>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9% 이상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가. 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감	비 고
계	1,008	1,008	-	
본 청	529	534	+5	
의회사무국	24	25	+1	
직속기관	145	138	△7	
사 업 소	57	57	-	
읍 면 동	253	254	+1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7급: 284명 → 286명(증 2명)
- 8급: 239명 → 249명(증 10명)
- 9급: 141명 → 129명(감 12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7. ~ 5. 8.(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천시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1,008	534(3)	25	138	57(1)	27	126	10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77	532(3)	25	109	57(1)	27	126	10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8	6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6급	소계	254	161	4	26	13	6	30	14	
	행정	51	47	2		2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12	8			1		1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2	13			1	1	3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2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2	30	2						
	행정+위생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10	10							
	행정+농업+녹지	6	3					3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해양수산+시설	4	3						1	
	행정+보건+보건진료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환경	1				1				
6급	행정+환경+위생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운전+방호	1	1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286	165	13	38	15	6	28	21	
	행정	83	49	12		4	1	12	5	
	세무	6	5						1	
	사회복지	19	3				1	9	6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7급	수의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보건진료	8			8					
	환경	2	2							
	시설	21	18			2	1			
	방재안전	1	1							
	운전	2	1			1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11	7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7	25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보건진료	2			2					
	보건+간호	2			2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1			1					
	시설+방재안전	2	2							
7급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농업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농업+수의+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49	117	3	33	12	11	35	38	
	행정	62	27			1	6	12	16	
	세무	2	2							
	사회복지	8	3				1	2	2	
	속기	1		1						
	공업	2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8급	의료기술	2			2					
	간호	20			6		1	7	6	
	보건진료	4			4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시설	18	14			1		3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행정+세무	12	6					2	4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7	9			1	1	2	4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5	1					2	2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1			2				
	행정+시설	19	16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공업+시설	2	2							
	농업+녹지	1			1					
	보건+간호	7			7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3	3							
8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6	2				1	2	1	
	행정+농업+시설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29	58(3)	2	4	14(1)	3	26	22	
	행정	26	10(3)			1(1)		9	6	
	세무	2	2							
	사회복지	12	3				1	1	7	
	사서	5				5				
	속기	1		1						
	방호	2					1		1	
	공업	1				1				
	농업	1			1					
	환경	1	1							
	시설	10	7			2		1		
	운전	4	1	1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2	8					9	5	
9급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7			2		1	1	3	
	행정+녹지	3	3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8	8							
	행정+방재안전	2	2							
	공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5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 상당	비서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2호

사천시 공고 제2023-663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4. 27.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14호선	노선번호 (노선명)	시도14호선 (용현 선진~사천 대포)
도로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진입출 회전교차로”을 위한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신청인 : (주) 더디벨로퍼 대표 조규진]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0번지 일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착수예정일 : 공고일 준공예정일 : 공고일로 부터 24개월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용현면 선진리 111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진입에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공고일 준공예정일 : 공고일로 부터 24개월		
허가조건	붙임 참조		